

제176회 거창군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 조례안상정

(조례 8건)

거창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1 ~ 43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
2011 ~ 44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1 ~ 45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1 ~ 46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2011 ~ 47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37
2011 ~ 48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5
2011 ~ 49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2011 ~ 50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	81

##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43
----------	-----------

제출연월일	2011. 7. 1.
제 출 자	거창군수

### 1. 폐지이유

○ 2005. 5월 조례 제정 이후 추진위원회의 운영실적과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실적이 없고, 전시행정 이미지 등으로 군민의 참여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여러 현실적 상황에 비추어 그 존치 필요성이 회의적인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지원(제4조)

-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나. 추진위원회 설치(제5조)

-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범 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추진위원회를 설치

#### 다.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제7조)

- 제자리 찾기 운동을 위한 주요사항의 기획·홍보 및 심의·의결
- 각종 민간단체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
- 제자리 찾기 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생략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제정) 2005.05.25 조례 제1739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범 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이하 “제자리 찾기 운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제자리 찾기 운동”이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군민들의 자율·자발적인 실천운동을 말한다.

제3조(참여범위) 제자리 찾기 운동에는 모든 군민과 민간단체 및 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는 필요한 행정·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추진위원회 설치) ①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범 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30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6조(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자리 찾기 운동을 위한 주요사항의 기획·홍보 및 심의·의결
  2. 각종 민간단체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
  3. 제자리 찾기 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자치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7항>

④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제10조(의결사항 등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군 공보 및 지역신문 등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위촉 및 해촉) ① 위원은 각계각층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위원이 직무와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나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을 해촉 한 경우에는 새로이 위원을 위촉 할 수 있으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규정)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05. 5.25 조례 제1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승강기산업벨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44
----------	-----------

제출연월일	2011. 7. 1.
제 출 자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거창승강기산업벨리에 승강기산업체를 집적하기 위한 투자유치 촉진 및 승강기R&D센터 지원사항과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투자계획 이행 확보, 지원의 취소, 지원금의 환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벨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내용에 맞게 신설되는 용어의 뜻을 추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승강기산업 집적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와 그 세부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 지원사업의 범위는 승강기산업체 유치 및 육성, 승강기산업집적화, 승강기 기술개발 및 신상품 개발, 승강기산업단지 조성·분양 및 임대사업, 승강기 인력양성, 승강기산업의 교류협력·마케팅 등 (안 제5조)
- 승강기산업체에 공유의 토지 임대 지원(안 제6조)
- 수도권 지역 또는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가 벨리에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의 지원(안 제7조)
- 승강기산업체가 집단화하여 벨리에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서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특별지원에 해당될 경우의 지원(안 제8조)
- 승강기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승강기산업체의 기술개발 비용 지원(제9조)
- 승강기산업체의 한국형 중·고속형 표준모델 공동브랜드 개발 및 생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10조)
- 승강기산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의 벨리 이전, 신설 또는 증설에 따라 발생하는 물류비 손실분 지원(안 제11조)

- 승강기산업체의 벨리 입주와 벨리 내 입주 승강기산업체의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숙소,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 지원(안 제12조)
- 벨리 조성 및 승강기산업체 유치를 위한 세제상의 지원(안 제13조)
- 승강기R&D센터가 승강기산업체의 기술개발 및 장비 지원 등 지원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과 공무원 파견 지원(제14조)

다.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투자 이행담보와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운영상황의 보고·관계서류의 제출 및 검사
- 관리대장 작성
-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조치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상 영위하고, 업종 전환 시 군수의 사전승인
- 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투자유치 촉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및 산업구조 고도화, 보조금의 집행 등에 관한 준용 규정을 두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 위임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제1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의2, 제26조, 제34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4, 제57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6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제11조, 제19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1-4호)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제41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나. 예산조치 : 2011년도 확보액(5,750백만원),

2012년도 이후 확보계획(9,400백만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재무과(재산관리담당)

라.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11. 5. 26. ~ 2011. 6. 15.)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승강기산업밸리의 원활한 조성과 승강기산업체의 유치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도시로의 동반성장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승강기산업밸리”(이하 “밸리”라 한다)란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지자체 등이 상호연계와 기술협력을 통하여 승강기산업집적을 활성화하고 승강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승강기”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승강기산업”이란 승강기 부품 소재 또는 부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완제품을 제조·설치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산업집적”이란 기업·대학·연구소 및 기업지원시설이 밸리에 집적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5. “승강기산업체”란 승강기산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하거나 보조한 기관·단체·법인을 말한다.

6. “본사”란 기업의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8.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연구 인력·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9.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0.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1. “이전기업”이란 타 시·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을 벨리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12. “투자기업”이란 이전기업, 연구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13.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14. “집단화”란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둘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밸리에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밸리 조성 및 승강기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인력양성,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밸리 조성 및 승강기산업체의 유치 및 산업구조 고도화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승강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① 군수는 밸리 조성 및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승강기산업체의 유치 및 육성
2. 승강기산업집적화 단지, 연구소, 생산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3. 승강기 기술개발, 시제품 및 신상품 개발, 상업화 기술개발
4. 승강기대학 및 승강기R&D센터 특성화, 국제교류 및 협력, 기업정보화
5. 승강기산업단지 조성·분양 및 임대사업

6. 승강기 인력양성, 승강기산업 창업보육, 승강기산업 생산지원 확충사업, 승강기제품 시험·인증사업
7. 그 밖에 승강기산업의 교류협력·마케팅·홍보·전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산업시설용지 등 지원)** ① 군수는 벨리 안의 토지나 투자 희망지역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승강기산업체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각 사안별로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의 토지를 임대받은 승강기산업체는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받은 토지 위에 본사, 공장, 연구소,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벨리 또는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승강기산업체에 대하여 입주계약 또는 협약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의 토지에 대한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승강기산업체 투자 지원)** ① 군수는 군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가 벨리에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하는 승강기산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호의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를 벨리에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의 기준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벨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집단지화 투자유치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승강기산업체가 집단화 하여 벨리에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서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련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술개발 지원) 군수는 승강기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승강기 산업체의 기술개발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동브랜드 생산 및 마케팅 지원) ① 군수는 승강기산업체가 한국형 중·고속형 표준모델인 공동브랜드를 개발 및 생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개발 및 국내외 시장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승강기산업체가 제품 홍보, 각종 전시회 참가,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물류비 손실보전) 군수는 승강기산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이 벨리에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함에 따라 발생하는 물류비 손실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군수는 승강기산업체의 벨리 입주와 벨리 내 입주 승강기산업체의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각종 부대시설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또는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세제상의 지원) 군수는 벨리의 원활한 조성과 승강기산업체의 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거창군세 감면조례」,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4조(승강기R&D센터 지원)** ① 군수는 승강기R&D센터가 승강기산업체의 기술개발 및 장비 지원 등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승강기R&D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3장 투자유치 승강기산업체의 사후관리

- 제15조(투자 이행담보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보조금의 운영상황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두고 보조 조건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의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타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사항을 포기 또는 축소하거나 사업계획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토지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지 않거나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 또는 임대한 토지를 7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공장 등의 이전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년 이내에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규모를 현저히 축소하는 경우
8. 사업계획서상의 상시고용인원 규모 이상을 3년 동안 유지하지 못할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제1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투자유치 촉진에 관하여는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관하여는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를,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각각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벨리 투자유치 계약이 체결된 사안으로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45
----------	-----------

제출연월일	2011. 7. 1.
제 출 자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지방세 관계법령 분법으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명칭,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인용조문 및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규정 신설에 따른 별지 서식 등을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과 포상금의 명칭 및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명칭을 개정 표준조례안에 맞게 정비함

(제명, 안 제2조제1항·제3항 단서, 제5조제1항).

-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 거창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경과연수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지급대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통일함(안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별지 제1호서식).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 1년차의 체납액
-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 ⇒ 2년차의 체납액
- 체납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체납액 ⇒ 3년차 이상의 체납액

다. 취득세 통합에 따라 탈루·은닉 취득세원의 발굴 및 징수기준이 되는 취득일을 ‘납세의무성립일’로 일원화하여 혼선을 방지함(안 제3조제1항제5호).

- 납세의무성립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이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 ⇒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

라.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규정 신설에 따라 관련 지급대장을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항목에 추가하는 등 별지 서식을 정비함

- 신설 : 별지 제3호서식<징수촉탁교부금 세입 포상금 지급대장>
- 변경 : 별지 제4호서식(중전의 별지 제3호서식)<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마.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지급명령에 근거하므로 인용조문을 명확히 화(안 제8조제2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표준안」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6(2011.01.10)호 및 경상남도 세정과-325(2011.01.10)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1. 5. 12. ~ 5. 3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을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세입금”을 “거창군 세입금”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거창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4급”을 “4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1년차의 체납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2년차의 체납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체납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3년차 이상의 체납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납세의무 성립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이”를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급한도액”을 “지급한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거창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거창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 중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징수촉탁교부금 세입 포상금 지급대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즉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종전의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u></p>	<p><u>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u>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u>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u> ----- ----- .</p>
<p>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u>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u>을 지급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u>세입금(군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u>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체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u>거창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u>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u>4급</u>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조(지급대상) ① ----- ----- ----- <u>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u>-----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거창군 세입금</u>----- ----- ----- ----- ----- ----- . ----- , <u>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u> ----- ----- .</p> <p>④ ----- <u>4급 공무원</u> ----- ----- ----- ----- .</p>

현행	개정안
<p>제3조(지급기준) ① (본문 생략)</p> <p>1. 과년도 체납액 중 <u>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u>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p> <p>2. 과년도 체납액 중 <u>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u>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p> <p>3. 과년도 체납액 중 <u>체납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체납액</u>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p> <p>4. (생략)</p> <p>5. <u>납세의무 성립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이 경과한</u>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p> <p>6. (생략)</p> <p>7.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지급기준) ① (본문 현행과 같음)</p> <p>1. ----- <u>1년차의 체납액</u>-----</p> <p>-----</p> <p>2. ----- <u>2년차의 체납액</u>-----</p> <p>-----</p> <p>3. ----- <u>3년차 이상의 체납액</u>-----</p> <p>-----</p> <p>4. (현행과 같음)</p> <p>5. <u>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u> -----</p> <p>-----</p> <p>6. (현행과 같음)</p> <p>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지급한도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p> <p>1. ~ 2. (생략)</p>	<p>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5조(거창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u>거창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p> <p>② ~ ④ (생략)</p>	<p>제5조(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p> <p>----- <u>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p> <p>② ~ ④ (생략)</p>

현행	개정안
<p>제6조(대장 비치) 세입징수부서는 <u>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u> 및 <u>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u>을 갖춰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p>	<p>제6조(대장 비치) ----- <u>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징수촉탁교부금 세입 포상금 지급대장</u>-----.</p>
<p>제7조(지급신청)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u>별지 제3호서식</u>에 따른다. ④ (생략)</p>	<p>제7조(지급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u>별지 제4호서식</u>에 따른다. 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u>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p>	<p>제8조(지급) ① ----- <u>즉시</u> ----- ----- ----- ----- ②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 ----- -----.</p>

【별지 제1호서식】

##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 월일	징 수 자		징 수 내 역					체 납 자		담 주 확	당 사 인	특별징수 공적사유	포상금	지급일
	직 급	성 명	구분	년도 납기	고지서 번호	세 목	징수액	주 소	성 명					

※ “구분”란에는 과년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를 표시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납기	부과자 (제보자)			세목	구분	발굴 세원	납세의무자		징수 일자	담 주 확	당 사 인	포상금	지급일
	직급	직위 (주소)	성명 (주민번호)				주소	성명					

※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정발전, 세입증대 등을 표시  
210mm×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징수촉탁교부금 세입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 월일	징 수 자		징 수 내 역					징수촉탁 교부금	담 주 확	당 사 인	포 상 금	지 급 일
	직 급	성 명	위탁 기관	세목	징수액	채납자명	주소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수신 : 거창군수

발신 : ○○읍·면장(인)

참조 : 재무과장

○ ○ ○(인)

(단위 : 원)

구 분	건 수	금 액			포상금
		합계	세 액	가산금	
합 계					
과년도 채납액 징 수	소 계				
	<u>1년차</u>				
	<u>2년차</u>				
	<u>3년차 이상</u>				
숨 은 세 발 은 원 굴	소 계				
	미등기				
	탈루·은닉 세 원				
	무단점용				
<u>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u>	<u>세정발전</u>				
	<u>세입증대</u>				
<u>징수촉탁 교부금</u>	<u>세입증대</u>				

※ 첨부 : 1.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민간인인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명자료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46
----------	-----------

제출연월일	2011. 7. 1.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정이유

○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의 추진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문화원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거창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군수 및 거창문화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의 추진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문화원사의 소재지와 주요시설, 그 업무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와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9조까지).

다. 문화원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 등 경비의 보조와 공유재산의 지원 등 거창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라. 그 밖에 문화원사의 관리·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과 보조금의 신청·지원 및 관리에 관한 준용 규정을 두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 위임사항을 제4장 보칙으로 규정함(안 제23조, 제2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5조, 제19조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2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36조, 제139조, 제14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나. 예산조치 : 2011년 본예산 확보(110백만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재무과(재산관리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1. 5. 27. ~ 2011. 6. 16.)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문화원사 관리·운영 및 거창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보존·전승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문화원사의 관리·운영과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거창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문화원사”(이하 “문화원사”라 한다)란 거창군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의 추진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거창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거창군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제21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제22조의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문화원사의 관리·운영과 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문화원사의 관리·운영

제5조(위치) 문화원사는 거창군 거창읍 김천3길 37-14번지 일원에 둔다.

제6조(시설)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업무시설(사무실, 회의실, 문화원장실 등)
2. 다목적 강당(공연장)
3. 공연장
4. 연습실
5. 교육실
6. 서고(자료실)
7. 그 밖의 지원시설

제7조(업무 및 기능) 문화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전시
2. 향토연구실 및 도서관 운영
3. 전통문화의 보존·전승 및 전통문화 행사의 개최
4. 각종 문화강좌 운영
5.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시설 등의 이용제공) 문화원사의 시설 및 각종 자료는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문화원사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사용제한)**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정치 및 종교활동이나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사용료)** ①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허가와 동시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 전액
2.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 50퍼센트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용료 전액
2. 문화원사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사용료 전액
3. 시설 사용일 10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 전액
4. 시설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5. 시설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군수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 중 시설물 등을 손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사용자의 시설 설치) ① 사용자는 공연 또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원에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문화원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수탁 내용, 위·수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문화원사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군수는 문화원사를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문화원사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운영위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장 문화원의 지원·육성

**제20조(경비의 보조 등)**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사업보조금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보조금은 제21조에 따른 사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21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때 지원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22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및 임차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 제4장 보칙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문화원사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문화원사의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며, 보조금의 신청·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문화원사 시설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분 시설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공연장	오 전	50,000	○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액의 20%를 가산한다.  ○ 공연 연습 또는 무대 설치 및 철수를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50%로 한다. (단, 심야 작업시에는 야간 사용료 전액을 적용함)  ※ 오 전(08:00 ~ 12:00) 오 후(13:00 ~ 17:00) 야 간(18:00 ~ 23:00) 1 일 (08:00 ~ 23:00)
	오 후	50,000	
	야 간	60,000	
	1 일	150,000	
다목적강당	오 전	10,000	
	오 후	10,000	
	야 간	15,000	
	1 일	25,000	
회의실, 교육실 1·2	1 일	10,000	○ 부가가치세 별도

###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분 시설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난 방	1시간	5,000	○ 시설별 시간당 연료(전기)사용료 ○ 냉방은 7~9월, 난방은 12~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 급변시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조정
냉 방	1시간	5,000	
음향시설	1 회	10,000	
조명시설	1시간	10,000	



##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47
----------	-----------

제출연월일	2011. 7. 1.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정이유

○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설치한 복합문화단지 내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수교육관의 소재지와 그 업무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에 따른 허가사항과 사용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그 밖에 사용자의 관리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라.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료 기준과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안 별표).

마. 전수교육관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 및 위탁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바. 그 밖에 전수교육관의 관리·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에 관한 준용 규정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 위임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 제1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41조, 제70조, 제74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2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36조, 제139조, 제14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나. 예산조치 : 2011년 본예산 확보(20,000천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재무과(재산관리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1. 6. 17. ~ 2011. 6. 27.)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설치한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수교육관”이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수탁관리자”란 군수로부터 전수교육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전수교육관은 거창군 거창읍 김천3길 37-14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무형문화재 공연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무형문화재 발굴 및 계발에 관한 사항
4. 무형문화재 체험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전수교육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형문화재 계승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용허가) 전수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사용료) ①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허가와 동시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7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하고, 제3호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2.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을 공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3.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용료 전액
2. 전수교육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사용료 전액

3. 시설 사용일 3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70
4. 시설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5. 시설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군수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 중 시설물 등을 손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사용자의 시설 설치)** ① 사용자는 공연 또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해당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관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수탁 내용, 위·수탁기간, 수탁관리자의 의무,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수교육관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전수교육관을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전수교육관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수탁관리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운영위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수교육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전수교육관의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시설 사용료 (제7조제1항 관련)

### 1. 기본시설 사용료

구 분		단 위	사용료(원)	비 고
연습실		오전 (09:00~13:00)	35,000	
		오후 (14:00~18:00)	35,000	
		야간 (19:00~23:00)	45,000	
		1일 (09:00~23:00)	100,000	
체험관	안 채	1일 (09:00~18:00)	40,000	
	아래채	1일 (09:00~18:00)	40,000	
야외 공연장		오전 (09:00~13:00)	10,000	
		오후 (14:00~18:00)	10,000	
		1일 (09:00~18:00)	20,000	

### 2.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단 위	사용료(원)	비 고
난 방	1시간	5,000	○ 냉방 : 7~9월 ○ 난방 : 12월~3월 다만, 기온 급변으로 필요한 경우 사용 허가 시 협의조정
냉 방	1시간	5,000	

#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48
----------	-----------

제출연월일	2011. 7. 1.
제 출 자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이후 사후관리적 방안에 중점을 두었던 현행 제도에 대하여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명시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과다 배출문제 해결과 낭비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 2. 주요내용

가. 원천적인 발생억제로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방향 전환에 따른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이후 사후관리적 방안에 중점을 두었던 현행 제도를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과 군수·사업자·주민 등 관계자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 감량 의무이행계획 제출 의무화 및 다량배출사업장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기본원칙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

○ 관계자의 책무

- 군 :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 사업자, 주민 : 발생억제 및 시책 협력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방안 신설
  - 군 :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발생억제 우수 주민과 업소 등에 대한 지원
  - 다량배출사업자 :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 방안 명시

**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수수료의 산정 및 부과·징수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함(안 제9조).**

-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과 함께 주민 총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되,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
- 단독주택 분리배출 시행에 따라 기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사용으로 수수료 징수를 위한 납부확인증(칩) 구입제 도입과 납부확인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 신설

**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을 위한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함(안 제2조,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자가처리에 앞서 발생억제 의무를 우선 부여
  - 발생억제보다는 발생 이후 자가처리에 중점을 두었던 ‘감량의무사업장’의 명칭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변경
  -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 감량의무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
-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 실시
  - 위탁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지불
  - 전용수거용기 사용
  - 위탁재활용자와의 계약서에 비용 부과내용 명시
- 감량의무이행계획 지도·점검
  -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의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 발생억제 방법 등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68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제16조
- 「식품위생법」 제2조, 제36조, 제37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5조
- 「관광진흥법」 제3조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2011년 본예산 206,500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1. 5. 6. ~ 5. 25.)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점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우수 주민과 업소 등(단체포함)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⑤ 다량배출사업자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 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 여부(위탁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 14조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무게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확인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려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봉투 판매가격은 생활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가격과 동일하게 정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사용 시 납부확인증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다.

⑦ 제3항의 납부확인증의 제작 및 안전관리, 공급 및 판매, 납부확인증 판매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확인증은 군수가 제작하며, 제작 시 군의 기관명, 문장, 심벌마크, 용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납부확인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불법제작 및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납부확인증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다.

4.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납부확인증 판매소에서 납부확인증을 구입하여 배출 시마다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5. 납부확인증 판매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업자가 대행한다.
6.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납부확인증 취급 및 매수와 환매,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7. 납부확인증 판매인은 납부확인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목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가. 주민편의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납부확인증 확보
  - 나. 모조 또는 불법 납부확인증의 진열 및 판매금지
  - 다. 납부확인증의 규정요금 준수 및 현금교환
8. 군수는 제7호 각 목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군수는 제7호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한 납부확인증 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별표 3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4와 같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68조제3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 등은 별표 5와 같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생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군수는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려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감량행위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할 것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할 것
3. 감량행위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할 것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할 것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것
  -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나. 발생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
  -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확인증 판매가격  
(제9조제6항 관련)

○ 단독주택, 공동주택,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

구 분	납부확인증 종 류	납부확인증 판매가격(원)/매		
		공급가액	수수료	판매가액
단독주택용	5 ℓ	90	10	100
공동주택용	120 ℓ	2,160	240	2,400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	20 ℓ	560	40	600
	120 ℓ	3,360	240	3,600

[별표 2]

## 납부확인증 등의 제작사양

(제9조제7항제3호 관련)

### 1. 납부확인증 등의 구조 및 재질

- 가. 납부확인증 부착함 : 납부확인증을 쉽게 삽입하기 편하고 수거를 위해 절단 하였을 때 절단된 칩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아야 하며 칩을 다시 삽입할 때 보관함속에 있는 칩 조각을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
- 나. 납부확인증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의 납부확인증 보관함에 삽입이 용이하고 절단 부위에 절단용 홈이 만들어진 구조
- 다. 재 질 : 합성수지

### 2. 납부확인증 규격

구 분	용 기	색 상	규 격
단독주택용	5 ℓ	노란색	가로30mm×세로44mm×높이1.4mm
공동주택용	120 ℓ	하늘색	가로42mm×세로48mm×높이1.4mm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	20 ℓ	분홍색	가로42mm×세로48mm×높이1.4mm
	120 ℓ	연두색	가로42mm×세로48mm×높이1.4mm

- ① 표시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확인증, 군마크, 거창군수, 용량 및 용도 표시
- ② 위조방지 :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조치(비표 및 홀로그램 삽입)
- ③ 제작방법 : 규격과 색상과 크기를 달리하여 상호 호환되지 않도록 제작
- ④ 규격, 색상, 디자인 :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함.

[별표 3]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확인증 판매소 행정처분 기준 (제9조제7항제9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려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처 분 기 준			비 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확인증 미비치	시정조치	취소		
나. 모조 또는 불법유출 납부확인증 진열 및 판매	취소			고발
다. 납부확인증을 현금으로 교환하지 아니한 때	시정조치	취소		
라. 그 밖의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시정조치	시정조치	취소	

[별표 4]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10조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쓰레기</li> <li>-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li> <li>-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li> <li>-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큰 뼈다귀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li> </ul>

[별표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 용량 등  
(제11조제4항 관련)

구 분	용 량	제 작 사 양
단독주택용	5 ℓ	-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 · 이동용 손잡이 부착
공동주택용	120 ℓ	-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 · 이동용 손잡이 부착 -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여야 함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	20 ℓ	-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 · 이동용 손잡이 부착
	120 ℓ	-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 · 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부착 -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여야 함



[별표 6]

## 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제1항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2. 개별기준

적용법	위 반 행 위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같은 건물 또는 일정 토지 안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같은 건물 또는 일정 토지 안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같은 건물 또는 일정 토지 안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같은 건물 또는 일정 토지 안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60	80	100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 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작성요령>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⑱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⑲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 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처리			재활용			
		자가 처리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법	재활용자	누 계

<작성요령>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 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 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49
----------	-----------

제출연월일	2011. 7. 1.
제 출 자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인 ‘토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유소·주차장 등의 시설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 1 비고 제1호).

○ 인접한 토지 ⇒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

나.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을 인하함(안 별표 1 제4호).

○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다.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분할 횟수 및 그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정함(안 제6조제2항 단서 신설).

○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임

라.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하여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3항 신설).

○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점용료의 부과·징수기준은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마.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대상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시행 주체인 법인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8조제1항).

○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호의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

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나 비영리 목적으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기준을 정함(안 제8조제3항제1항).

-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사.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 정도에 따른 감면기준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8조제3항제2호).

아. 그 밖에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논리에 맞게 순화함.

- 도로법 제43조 ⇒ 제41조, 제44조 ⇒ 제42조, 제75조 ⇒ 제84조
-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 제2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제38조, 제41조, 제42조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2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3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1. 5. 26. ~ 6. 15.)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사용료”라 한다)”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로, “도로의 구역안에서”를 “도로의 구역에서”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를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로,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개축·변경 또는 제거”를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로 한다.

제4조 중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으로, “별표1에”를 “별표 1에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로, “부과·징수하고자 하는”을 “부과·징수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를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로, “당해”를 “해당”으로, “개시후”를 “개시 후”로, “3월”을 “3개월”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이를”을 “점용료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4조에 따라”로, “점용료중”을 “점용료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③ 군수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 중 “10%”를 “10퍼센트”로, “당해”를 “해당”으로,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을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44조제1호”를 “법 제42조제1호”로, “이라함은”을 “이란”으로, “군수가 정하는 법인”을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호의 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4조제3호”를 “법 제42조제3호”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이라함은”을 “이란”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시설로서 군수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42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법 제4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4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 -----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사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 호-----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
제4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신청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점용의 허가신청) -----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41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 별표 1에서 ----.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 -- 부과·징수하려는 ----- ----- --.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후 3월 이내로 부과·징수한다.</p> <p>&lt;단서 신설&gt;</p> <p>&lt;신 설&gt;</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lt;단서 신설&gt;</p> <p>④ 군수는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 ----- ----- ----- ----- 해당 ----- ----- 개시 후 3개월 -----.</p> <p>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p> <p>③ 군수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 점용료를 ----- ----- .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⑤ --- 법 제84조에 따라 ----- ----- ----- 점용료 중 ----- ----- .</p>

현행	개정안
<p>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p>	<p>⑥ ----- ----- 따른다.</p>
<p>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u>10%</u>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u>당해</u>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u>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u> 금액으로 한다.</p>	<p>제7조(점용료의 조정) ----- ----- ----- <u>10퍼센트</u> ----- ----- <u>해당</u> ----- ----- <u>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u> ----- -----.</p>
<p>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u>법 제44조제1호</u>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u>이라함은</u>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u>군수가 정하는</u>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p> <p>② <u>법 제44조제3호</u>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u>대통령령이 정하는</u> 사업"<u>이라함은</u>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u>기타</u>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u>군수가 정하는</u>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p>	<p>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u>법 제42조제1호</u>----- -----<u>이란</u> ----- ----- ----- 「<u>도로법 시행규칙</u>」 제24조 각 호의 <u>법인</u>-----.</p> <p>② <u>법 제42조제3호</u>----- ----- <u>대통령령으로</u> -----<u>이란</u> ----- ----- ----- <u>그 밖에</u> ----- <u>시설을 설치하는 사업</u>----- -----.</p>

현행	개정안
<p>③ 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법 제44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p> <p>2. 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p> <p>3.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p>	<p>③ 법 제42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법 제4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p> <p>2. 법 제4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p> <p>3. 법 제4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p>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제5조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 단위	기 간 단 위	2007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이후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600	690	780	850	850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900	1,030	1,160	1,250	1,25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24,100	24,100	24,100	24,100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m	1년	150	170	190	200	200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300	340	380	400	400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600	690	780	850	850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900	1,030	1,160	1,250	1,250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200	1,370	1,540	1,650	1,650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500	1,720	1,930	2,050	2,050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2,250	2,580	2,910	3,100	3,100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3,750	4,300	4,860	5,200	5,200	5,200
		지름 3.0m 초과			5,250	6,020	6,800	7,250	7,250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압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m	1년	200	230	260	290	300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450	510	570	600	600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900	1,030	1,160	1,250	1,250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350	1,540	1,740	1,850	1,850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800	2,060	2,330	2,500	2,500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2,250	2,580	2,910	3,100	3,100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3,350	3,840	4,330	4,600	4,600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5,600	6,430	7,260	7,750	7,750	7,750
		지름 3.0m 초과			7,850	9,010	10,180	10,850	10,850	10,850



3.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한다), 시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m <sup>2</sup>	1일	100	110	120	130	140	150	
		기타	표시면적 1m <sup>2</sup>	1년	15,000	17,220	19,460	20,700	20,700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m <sup>2</sup>	1년	9,900	9,900	9,900	9,900	9,900	9,900
	시설안내표지			1개	1년	12,500	14,350	16,210	17,250	17,250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m <sup>2</sup>	1일	50	50	50	50	50	50	50
		그 밖의 용도	표시면적 1m <sup>2</sup>		100	110	120	130	140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m <sup>2</sup>	1년	30,000	34,440	38,920	41,400	41,400	41,400	41,400	
	기타	표시면적 1m <sup>2</sup>		15,000	17,220	19,460	20,700	20,700	20,700	20,700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m <sup>2</sup>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m <sup>2</sup>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m <sup>2</sup>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m <sup>2</sup>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m <sup>2</sup>	1일	100	110	120	130	140	15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m <sup>2</sup>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m <sup>2</sup>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 1,950원→ 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만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

##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50
----------	-----------

제출연월일	2011. 7. 1.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정이유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을 위한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과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과 그 운영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4장에서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마.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그 이용대상자의 범위,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서 규정함(안 제21조, 제22조).

바.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 위임사항을 제6장 보칙으로 규정함(안 제23조, 제2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6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0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81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04조
-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나. 예산조치 : 2011년 추경예산 확보계획(195백만원), 2012년 본예산 확보계획(220백만원)

다. 합의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주민생활지원실(복지정책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1. 6. 8. ~ 6. 27.)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거창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하면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 “이동지원센터”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4. “저상버스”란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영업용 및 자가용을 포함한 승합자동차 중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평으로 승·하차가 가능한 경사판 등을 장착한 구조를 가진 버스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거창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제4조(설치 및 기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거창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벽지 및 농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촉위원은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2명 이상으로 한다.

1.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
2.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3.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의견청취 및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분야의 안전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장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제14조(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 도입계획과 운행계획
3.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4.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계획
5.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6.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
7.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계획
8.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예산의 수립
9.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
10. 저상버스 운전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11. 농어촌버스 준공영제 시행 노선에 대한 교통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①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버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50 퍼센트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저상버스를 도입 및 운영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을 농어촌버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이동지원센터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17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6.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8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 ③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군수는 이동지원센터를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최선을 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운영위탁기간 중 위탁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할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약사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이동지원센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설치 목적에 위배되게 운영한 경우
3. 수탁자가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군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위탁의 취소 처분으로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장 특별교통수단

제21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2. 특별교통수단은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거창군일 경우 경남도내 어디서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
3. 특별교통수단은 즉시 신청, 예약 신청 및 장기 이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4.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자의 확인 후 지원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5.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5.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한다. 다만, 농어촌버스 요금(시외버스는 해당구간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제6장 보칙

제23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